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염두에 둘 만한 페이지입니다. 이민·법률·부동산·세금·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d. LA, CA90010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조인트 테넌트로 매입한 집, 남편 빚으로 뺏길 수 있나

〈문〉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중입니다. 저희는 결혼 후 집을 하나 샀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진빚이 많아서 집문서에는 남편과 아내가 조인트 테넌츠(Joint Tenants)로 소유권을 갖도록 표기하였습니다. 얼마전, 남편이 결혼 전 사업 관계로 음자를 했던 은행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부채액수에 대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채권 승소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하여 저희 집을 매매하여 전체 매매금이 은행의 채권 승소 판결액을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은행은 집이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남편의 채무 지급에 100% 저촉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집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하리라 봅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 의하면, 결혼 기간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Community Property) 간주됩니다. 이러한 부부 공동 재산은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결혼 전이나 결혼 이후에 진빚을 청산하는데 쓰여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

의 사유 재산은 개인 자신의 빚이 아닌 배우자의 채무 의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채권자가 개인의 사유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과 혼인 후 Joint Tenants로 매입한 집이 부부 공동의 재산이니, 혹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씩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유 재산이나에 따라 남편의 채권자가 집 매매금의 100%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주에서는 부부 두사람의 이름으로 또 부부임을 명시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일반 원칙이 적용되나, 만약 문서에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다른 형태의 소유권의 형식을 명시했을 때는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일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집 매입시, 남편의 부채로 인해 집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남편의 채무에 100% 쓰여질 것을 막기 위하여 Joint Tenants의 소유권 형식을 취했으므로,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문 이혼 재판에 증인 출두 소환장 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나

〈문〉 얼마 전에 서로 알고 지내왔던 부부의 이혼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Subpoena)을 받았습니다. 저는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가게를 비우기도 불편하고 양쪽 부부를 다 잘 알고 지내오던 터에 증인으로 나오라니 입장도 영 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인으로 출두할 것을 피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답〉 귀하께서 받으신 서류는 귀하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증인으로 재판에 출두하라는 Civil Subpoena Duces Tecum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비록 소송 당사자들의 변호사의 요청에 의해 발부됐다고 해도 개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두

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가 아니라 법원에서 귀하를 증인으로 출두할 것을 명령하는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증인으로 소환되는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져야하는 법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전달 받으시고도 법정 출두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형사 및 민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불편함은 법원의 명령을 불이행하는데 정당한 사유로 고려되지 않으므로 재판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출두하시는 것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문 7년 밀린 자녀 양육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문〉 저는 7년전에 이혼을 하고 딸을 혼자 키워온 엄마입니다. 자녀 양육비로 한 달에 400달러씩 전 남편이 지급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남편은 지난 7년간 자녀 양육비 지급을 기피하기 위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화 번호부나 우체국, 혹은 친척을 수소문하여 전 남편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를 못하다 최근에 LA로 와서 가게를 하거나 차린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지난 7년간에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하리라 봅니다. 92년 이전에는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생계보조비의 판결이 그 유효기간을 넘겼는데 지금 이행이 안된 경우, 주기적으로 해당 판결문의 집행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절

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9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녀 양육비, 배우자 생계보조비에 관련된 판결은 그 집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판결문의 집행 기간을 연장시키는 절차를 밟아야되는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생계 보조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판결에 따른 원금은 물론 그에 붙은 이자와 벌금까지 합친 총 액수가 모두 완불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녀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으며 귀하는 전 남편을 찾아 판결문을 이행해 보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므로 해당 가정법 원에 밀린 양육비의 지급 소송을 신청하시면 무난히 전 액수를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